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554
----------	-------

발의연월일 : 2026. 8. 12.

발 의 자 : 황정아 · 이주희 · 권향엽
전은수 · 장종태 · 한준호
이광희 · 김 현 · 이연희
문금주 · 김준환 · 김남국
김우영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고품, 임대용 자산을 제외한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곱한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고 있음.

그런데 토큰 생산과 지능을 수출하는 AI 팩토리 역할을 하는 데이터센터의 경우 임대업으로 분류되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우려가 대두되고 있음. 특히 AI 팩토리의 특성상 자가소비가 아닌 인프라를 대여하는 것이 사업의 본질임을 고려할 때 AI 팩토리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음. 또한, AI 팩토리가 생산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 생산세액공제를 신설하여 AI 인프라 구축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으로 토큰을 생산하는 AI 팩토리 등을

명시하고, 내국인이 AI 팩토리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토큰 등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생산량에 비례하여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국내 AI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3대 메가프로젝트 투자 속도를 견인하려는 것임(안 제24조 및 제100조의35 신설 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호가목 또는 나목”을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로,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를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다만, 제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임대용 자산으로 보지 아니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나목을 라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 및 다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라목(종전의 나목) 중 “가목”을 “가목부터 다목까지”로 한다.

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다. 토큰을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
제2장에 제10절의6(제100조의35)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절의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판매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의 산정,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2조제1항제3호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제144조제1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9조의12”를 “제99조의12, 제100조의3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7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0조의3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생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가. (생략)

<신설>

<신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2.·3. (생략)

② ~ ⑤ (생략)

<신설>

<신설>

가. (현행과 같음)

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다. 토큰을 생산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2.·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0절의6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조세특례
제100조의35(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가 2030년 12월 31일까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서 생산하여 판매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 팩토리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생산비용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판매한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받는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한도로 한다.

②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에 관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 대상 서비스의 생산량 및 생산비용의 산정,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 까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 29조의8, 제30조의3, 제30조의 4, 제31조제6항, 제32조제4항, <u>제99조의12</u> , 제104조의8, 제10 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 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 의30, 제104조의35, 제122조의 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른 세액공제금액	----- ----- ----- ----- ----- ----- ----- ----- ----- <u>제99조의12, 제100조의35</u> ----- ----- ----- ----- ----- -----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제144조(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① 제7조의2, 제7조의4, 제8조 의3, 제10조, 제12조제2항, 제12 조의3, 제12조의4,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9조제1항, 제24 조, 제25조의6부터 제25조의8까 지, 제26조, 제29조의2부터 제2 9조의5까지, 제29조의7, 제29조 의8, 제30조의3, 제30조의4, 제9 6조의3, <u>제99조의12</u> , 제104조의 8,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① ----- ----- ----- ----- ----- ----- ----- ----- ----- ----- <u>제99조의12, 제100조의</u> <u>35</u> -----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04조의30, 제104조의32, 제104조의35, 제122조의4제1항, 제126조의6, 제126조의7제8항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공제할 세액 중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제132조에 따른 법인세 최저한세액 및 소득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그 이월된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사업소득(제96조의3 및 제126조의6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각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으로서

